
1381 해외인증자료



작성일자 2025.01.17.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유럽 수출시 적용되는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 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EU의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 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EU에서는 포장 폐기물의 감축을 의무화 하기 위해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을 제정, 2024년 12월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품목 외, 포장재 용도별로 재사용 의무 비율 목표를 설정,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 금지 등의 규제 등이 적용됩니다. PPWR은 EU관보 게재 후 18개월 후부터 적용돼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PPWR 개요

- ▶ EU 역내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 ▶ EU의 순환경제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의 일환
 - 현재 각 회원국의 상이한 **포장 폐기물 처리법을 EU 차원으로 통합하여**, 불필요한 포장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재사용·재활용 촉진하고자함

*순환경제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 기존의 제품 생산과 폐기를 반복하여 환경오염을 반복하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에서 벗어나, 원자재취득 단계부터 재활용 단계까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을 도모
- 선형경제 : 생산→유통→소비→수거 및 폐기
 - 순환경제 : 원자재 취득→제품설계→생산→유통→소비→수거→재활용

▶ PPWR 목표

포장 폐기물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포장재 재활용·재사용·리필촉진 및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포장재 재사용 또는 재활용

▶ PPWR 적용 대상

산업, 상업, 가정 및 전 분야를 포함한 모든 포장 및 포장폐기물

▶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 현황

- 1994년, 현 포장재 지침(Directive 94/62/EC)발효
- 2022년 11월 EU 집행위원회 개정 규정 제안 및 공시
(Regulation on package and package waste)
- 2024년 4월 EU 의회 승인
- EU 이사회 최종 승인 및 관보 게재 예정 : 규정 발효 후 각종 “시행령”수립 예정
- **2024년 12월 PPWR 최종 승인(2024년 12월 16일 European Council 공식 발표)**

▶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개정안 공시 버전

- PPWR :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2PC0677>

▶ PPWR 주요 내용

- ▶ 포장 폐기물 감축 의무화
 - 특히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감축에 주력**할 전망으로 유럽의회의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
- ▶ 포장재 재사용 및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 ▶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 규정 발효 후 3년 이내, 바이오 플라스틱(bio-based plastic)의 기술 수준을 평가, 플라스틱 포장재 내 바이오 플라스틱 함량 관련한 요건 등을 수립할 예정
- ▶ 과불화합물(PFAS) 포함된 식품 포장재 출시 금지
 - 2026년부터 기준치를 초과하는 PFAS을 함유한 식품 포장재의 출시 금지
- ▶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 금지**
- ▶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DRS : Deposit Return System)도입
- ▶ 과포장 제한

▶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 제 7조 Minimum recycled content in plastic packaging

- ▶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집행위는 규정 발효 후 3년 내, 바이오 플라스틱(bio-based plastic)의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플라스틱 포장재 내 바이오 플라스틱 함량 관련한 요건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 From 1 January 2030, the plastic part in packaging shall contain the following minimum percentage of recycled content recovered from post-consumer plastic waste, per unit of packaging:
 - (a)30 % for contact sensitive packaging made from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as the major component;
 - (b)10 % for contact sensitive packaging made from plastic materials other than PET, except single use plastic beverage bottles;
 - (c)30 % for single use plastic beverage bottles;
 - (d)35 % for packaging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oints (a), (b) and (c).

2.From 1 January 2040, the plastic part in packaging shall contain the following minimum percentage of recycled content recovered from post-consumer plastic waste, per unit of packaging:

- (a)50 % for contact sensitive plastic packaging, except single use plastic beverage bottles;
- (b)65 % for single use plastic beverage bottles;
- (c)65 % for plastic packaging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points (a) and (b);

<연도별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원료 사용 최소 비율>

플라스틱 포장 유형	2030.01.01. 까지	2040.01.01. 까지
1회용 음료수병	30%	65%
식품 접촉 포장재(PET)	30%	50%
식품 접촉 포장재(PET 이외)	10%	50%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	35%	65%

※출처 : Kati [유럽]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 개정안(2024-07-06)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549&menu_dept=35&menu_dept3=71

▶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DRS : Deposit Return System)도입

- 포장 소재에 따라 재활용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포장재에 대한 보증금을 붙여서 판매하고, 반환시 돌려받는 제도
- 2029년까지 DRS를 도입, 3L 이하인 플라스틱(페트병), 캔 등의 음료 용기수거율 90%달성 목표
-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 등의 회원국은 유사한 제도를 시행중이며, 벨기에는 2025년부터 페트병과 캔에 보증금을 부과할 예정
- 단, 2026년 수거율이 80% 이상이거나, 90% 목표 달성 전략을 제출한 회원국은 DRS 제도 도입 의무 면제

▶ 확장된 생산자 책임제(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확장된 생산자란 물건을 만든 생산자뿐만 아니라 제품을 시장에 최초로 출시한 판매자까지의 포괄적인 생산자의 개념을 말합니다. 폐기물 처분의 책임을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확장하는 것으로, 생산자가 지정된 물량의 폐기물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상응하는 부담금 납부 해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입품의 경우 폐기물 포장재를 EU 시장에 들여오는 수입자가 소재국 담당 기관에 회사를 등록하여 연간 배출하는 포장 폐기물의 양을 신고하고, 그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 2024년 말까지 모든 회원국의 시스템 구축
- “생산자(Producer)” = 해당 포장재를 EU 시장에 최초로 들여오는 자
 -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자”에 해당
- 수입식품 수입업체는 소재국 담당 기관에 등록 의무

* 국가별로 부담금 납부 제도가 다름에 주의

예) 프랑스의 ERP 부담금 발생 비용 산출 기준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천 유로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분기별 신고 및 납부 후, 차년도 초에 실제 비용을 정산받는 형식.

▶ 과불화합물(PFAS) 포함된 식품 포장재 출시 금지

- 2026년부터 기준치를 초과하는 PFAS을 함유한 식품 포장재의 출시 금지
- 집행위는 본 규정 적용 후 4년 이내에 동 조항 수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

▶ PPWR 포장재 재활용 효율 등급 규정

‘재활용 효율’이란 하나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고려됩니다. (폐기물을 각기 다른 재활용 요소로 분리할 수 있는 재활용 가능성, 사용 가능한 재활용 기술과 그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성과와 같은 요소)

- 2030년까지 A, B, C(95%/80%/70%) 3등급으로 나눔
- 2035년부터 *대규모 재활용 요소가 추가되어 2038년까지 A, B(95%/80%) 2등급의 재활용 가능성 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
- **궁극적으로 재활용 효율 등급이 80% 미만인 모든 재료는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

*대규모 재활용 요소(Recycled at scale) : 최첨단 인프라와 공정을 통해 수거, 분류 및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 수거된 포장 폐기물을 포장에서 수거, 재활용, 재생산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재활용 운영 환경의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재활용 효율 성능은 2028년 1월까지 유럽위원회가 정한 '재활용 설계' 기준에 따라 A, B 또는 C로 평가됩니다. 각 등급은 단위당 상이한 수준의 재활용 효율을 나타내며, A는 95% 이상의 재활용 효율, B는 85% 이상의 재활용 효율, C는 70% 이상의 재활용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장재 폐기물이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 되려면 포장재는 2030년까지 최소 C 등급을 획득해야 합니다. 30년 이후에는 재활용 효율이 70% 미만이면 사실상 유럽 내 시장 유통이 어렵게 되며, 70% 이상은 재활용을 위한 설계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 당국이 성능 등급에 따라 확장된 생산제 책임제(EPR)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European Council : Sustainable packaging: Council signs off on new rules for less waste and more re-use in the EU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12/16/sustainable-packaging-council-signs-off-on-new-rules-for-less-waste-and-more-re-use-in-the-eu/>
- EUR-Lex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개정안(Regulation on package and package waste)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2PC0677>
- KOTRA 해외시장뉴스 : EU,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입법 동향
<https://me2.do/Fmfv9k48>
- KATI : [유럽] 친환경 포장재 관련 규정 개정안(2024-07-06)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549&menu_dept2=35&menu_dept3=71
- KATI : [유럽] 포장재 관련 재활용 등급 규정 동향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922&menu_dept2=35&menu_dept3=71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해당 자료는 제품 분류 및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및 절차로서, 세부 품목에 따라 별도의 절차 및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에 필요한 국가별, 제품별로 적용되는 강제 규제 또는 특정 인증에 대하여 해외정보자료를 무료로 조사하여 드립니다.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자료실에 첨부되어있는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파일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 드립니다.

문의처

상기 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 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기간, 가격 등의 상세 실무정보 및 최신 현지정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유럽 현지의 수입업체,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라별로 통용되고 있으나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인증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강제 인증의 성격을 띠고 있는 품질인증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제조자가 현지 시장동향과 주요 타겟층 설정 및 소비자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지 동향이나 업계 요구사항,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 정보는 해당 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유럽지역본부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kkbc/selectOvrskkbcDetail.do?deptCd=9500>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프랑스 파리 무역관, 스페인 마드리드 무역관, 이탈리아 밀라노 무역관 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http://eu.kita.net/>

- KITA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TEL : 1566-5114)

<https://www.kita.net/expertHub/main.do>

유의사항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컨설팅, 대행 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정보센터에서는 대행기관(컨설팅회사)을 추천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작성일자 : 2025.01.17.]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전담대응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인증분야(CE, NMPA, FDA, CPNP,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유선·모바일·온라인 등을 통해 상시 문의사항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예정)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주요 인증 분야 (유럽 CE, CPNP, 중국 NMPA, 미국 FDA,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에 대한 문의 사항 상담 및 교육 지원
3. 상담절차 : 상담 채널 (유선/모바일/온라인) → 주요 인증 분야 문의 → 애로 해결 지원 (유선/1:1상담/게시판 답변)



4. 문의처
 - 유선 ARS 대표번호 : 1577-9911
 -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 :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
 - 온라인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전담대응반
(<https://www.smes.go.kr/globalcert/user/exclusiveCharge/exclusiveChargeOnaList.do>)

5. 운영방법
 - 관리기관 내 대응 채널(유선-ARS, 모바일-카카오톡 채널, 온라인-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상시 애로 접수·상담 운영
 - 미 해결시 방문형 컨설팅과 연계하여 인증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지원
 -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의 인증획득 성공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인증 교육 실시

※ 주 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 기간은 귀사 제품에 적용되는 시험 항목, 시험 기관, 귀사의 관련 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

